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1 - 221호

의 안 명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대상기관 경찰청

의 결 일 2021. 4. 12.

주 문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1년 4월 12일

위 원 장 전 현 희

위 원 이 정 희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강 재 영

위 원 박 계 옥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2021. 4.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일반현황	2
III. 문제점	9
① 운전자의 능동적 음주운전 제어 유도에 미흡	9
② 운전자의 근원적 음주운전 습관 개선에 한계	12
IV. 개선방안	
① 음주운전 행태 제어를 위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15
② 음주운전 습관 근원적 치유를 위한 음주치료 이수 의무화	17
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19
[참고1]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결과(1차)	20
[참고2]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결과(2차)	24



I. 추진배경

-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정과제 5. 국민참여 확대 및 국민고충 해소로 신뢰사회 구축

< 대통령 강조사항 >

- ◇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이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18.10.10. 수석보좌관회의)

□ 국민 권익의 선제적 구제를 위해서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 사회적 이슈와 민원 분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선제적 예방 대책 마련 필요

□ 음주운전의 상습성,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하였고, '음주운전' 관련 민원은 총 12,423건('17~'19)으로 증가 추세

※ ('17) 3,119건 → ('18) 3,573건 → ('19) 5,731건

- 특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전체의 과반(54.4%)을 차지

< 최근 3년(2017~2019)간 음주운전 관련 민원 현황 >

구분 \ 연도	2017	2018	2019	계
음주운전 민원(건)	3,119	3,573	5,731	12,423
단속 및 처벌강화 민원(건)	1,419	1,818	3,526	6,763 (54.4%)

※ 국민신문고 민원분석시스템(민원 제목·내용에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처벌”이 포함된 건수)

□ 이에 민원 분석, 국민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문제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민원분석('20.10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조사 및 전문가 자문('20.11~12월), 기관협의('21.1~3월), 제도개선안 관련 2차 국민위견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21.2~3.)

II. 일반현황

1 음주운전의 특징 및 국민 피해 현황

□ 음주운전의 개요

-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함
-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대뇌활동이 억제돼 졸음이 오고, 판단능력, 시·공간 파악능력, 위험대처 및 정보처리능력 저하로 사고 위험 높음¹⁾

□ 음주운전 사고 현황 및 특징

- (현황) 음주운전 사고는 최근 3년간(2017~2019년) 54,678건 발생하였고, 사망자는 1,080명, 부상자는 92,277명에 이룸
- 하루 평균 50건의 사고, 1명의 사망자, 84.3명의 부상자 발생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17년	19,517	439	33,364
2018년	19,381	346	32,952
2019년	15,780	295	25,961
합계	54,678	1,080	92,277
하루 평균(3년)	50	1	84.3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1) 채규만, 류명은, 성격·인지·사회적 환경 및 음주행동과 음주운전간의 관계(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 **(높은 치사율)**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명**으로 비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18% 높음**

- 특히, 2019년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하였고, 비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에 비해 약 36% 높음

구분	음주운전			정상운전(비음주)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명)	사고건수	사망자수	치사율(명)
2017년	19,517	439	2.2	196,818	3,746	1.9
2018년	19,381	346	1.8	197,767	3,435	1.7
2019년	15,708	295	1.9	213,892	3,054	1.4
합계	54,606	1,080	2.0	608,477	10,235	1.7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 **(높은 상습성)** 음주운전 단속 건수를 기준으로 한 재범률은 연평균 **44%**이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 사범보다 평균 **8%p** 높음

구분	음주운전 단속			마약류 사범		
	전체건수	재범건수	재범률	전체건수	재범건수	재범률
2017년	205,187	90,602	44.2	14,123	5,131	36.3
2018년	163,060	72,892	44.7	12,613	4,622	36.6
2019년	130,772	57,200	43.7	16,044	5,710	35.6
2020년(1~6월)	54,791	25,441	46.4	-	-	-

※ 출처: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검찰청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비용은 연간 1조원을 초과²⁾하고,
 -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음주운전 피해자는 후유장애가 남는 중상해를 입고(62%), 소득 감소(28%), 실직(20%) 등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겪음³⁾
-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치료비, 합의금 등을 지급하고, 가해자의 신체상해도 보상하나,
 -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손실 등 부담을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함으로써 충당함

※ 음주운전 사고에 지급되는 보험금은 연간 3천억원(보험개발원, '20)

□ 국내와 해외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비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5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2위로 높고,
 -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사망자수는 평균 약 10%* 비중을 차지

* (2017년) 10.5% → (2018년) 9.1% → (2019년) 9%

※ OECD 주요 15개 국가 교통사고 사망자수(2018년)

국가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국가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미국	11.2	한국(2위)	1.4
한국(5위)	7.3	미국	1.2
캐나다	5.2	캐나다	0.8
프랑스	5.0	프랑스	0.7
호주	4.6	호주	0.6
독일	3.9	독일	0.6
일본	3.3	일본	0.5
스웨덴	3.2	영국	0.5
영국	2.7	스웨덴	0.5
노르웨이	2.0	노르웨이	0.3
OECD 평균	5.4	OECD 평균	0.8

※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 오승연, 이정택, 상습적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 방안(보험연구원, 2017)

3) 임재경,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근절 방안(도로교통연구본부, 2020)

2 우리나라와 해외의 예방대책 현황 비교

□ 우리나라 음주운전 방지 대책 현황

-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 하고,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면허 재발급을 제한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 면허정지 / 0.08%이상: 면허취소

- 또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무 교육 실시

구분	내용	근거 법률
면허 취소 시 일정 기간 면허 재발급 제한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5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간 제한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단속된 경우, 2년간 제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 (내용)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안전운전의 기초, 교통법규, 운전면허 및 자동차관리 등 • (방법) 3~16시간 강의·시청각 교육 또는 현장체험교육 등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 고(故)윤창호씨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이후 국민적 공분이 고조되자 관련 법령을 개정('18.12.시행)하여 형사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 음주운전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처벌수준이 낮다는 국민적 공분 지속

※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20여건 이상 제기('20.1.~)

구분	종전	개정('18.12.)	근거 법률
음주 운전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500~1,000만원 벌금	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000~2,000만원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제148조의2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 상해사고	10년 이하 징역 500~3,000만원 벌금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1,000~3,000만원 벌금	제5조의11

※ 관련 법안 발의 현황(제21대 국회)

법률안명	주요 내용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박재호의원('20.8.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중대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신상 정보 공개	문진석의원('20.9.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으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경우 방조행위로 의제	하태경의원('20.9.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면허가 취소된 경우, 5회 이상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포함	김회재의원('20.1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상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 처벌	이재정의원('20.12.1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	노웅래의원('20.12.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를 영구히 박탈 , 1회 취소된 경우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	노웅래의원('21.1.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면허 취소를 받은 경우 의무교육 이수 전 전문의와 상담한 결과를 제출	박상혁의원('21.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에 동승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박광온의원('21.3.5.)

□ 해외 음주운전 방지 대책 현황

제도	국가별 현황																		
차량 시동잠 금장치 설치	• (미국) 1980~90년대 도입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30만개의 장치가 차량에 설치·운영 중, 대부분의 주에서 초범 또는 재범부터 설치 의무화 • (호주) 면허 취소 시, 12개월 이상 설치 의무화 • (캐나다) 1990년대 도입을 시작해 11개 주에서 시행 중, 특히 온타리오 주는 1차 음주운전 위반자 12개월, 2차 36개월, 3차 평생 설치 의무화 • (스웨덴) 2012년부터 신규 차량 구매자 설치 의무화, 자동차 회사는 옵션 상품으로 판매하고, 운송회사는 5,000대 이상의 차량에 설치 중 • (EU) 신규 사업용 여객 및 화물 운송차량, 1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된 차량 전부에 설치 의무화 이행계획 마련 촉구('11.7)																		
음주 치료 의무화	• (영국) 음주운전 재발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할 시 형량 경감 혜택 제공, 상습 음주운전자는 의사의 정기적 진찰을 받고 동의를 있어야 면허 재발급 가능 • (미국)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DDP(Drink Driver Program), ASAP(Alcohol&Substance Abuse Program) 등에 의무적으로 참여해 알코올 의존성 정도를 검사받고 치료받음 • (캐나다) 치료조건부 선고 유예 등 알코올의존증 치료 촉진 • (프랑스) 운전면허 취소 시 1~3년간 의무적 의학적 치료 필요 • (스웨덴) 음주운전자는 알코올 의존치료를 받고 의료증명서를 제출해야 운전 면허 재발급 가능 • (독일) 음주운전자는 면허 재취득을 위해 의료심리학적 감정서 제출																		
차등적 단속 기준 (초보, 영업용 차량)	<table><tr><th>국가</th><th>일반적 기준(%)</th><th>차등적 기준(%)</th></tr><tr><td>미국</td><td>0.08</td><td>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4</td></tr><tr><td>호주</td><td>0.05</td><td>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2</td></tr><tr><td>캐나다</td><td>0.08</td><td>초보·직업운전자: 0.00</td></tr><tr><td>프랑스</td><td>0.05</td><td>초보·직업운전자: 0.02</td></tr><tr><td>독일</td><td>0.05</td><td>초보·직업운전자: 0.00</td></tr></table>	국가	일반적 기준(%)	차등적 기준(%)	미국	0.08	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4	호주	0.05	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2	캐나다	0.08	초보·직업운전자: 0.00	프랑스	0.05	초보·직업운전자: 0.02	독일	0.05	초보·직업운전자: 0.00
국가	일반적 기준(%)	차등적 기준(%)																	
미국	0.08	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4																	
호주	0.05	초보운전자: 0.00 / 직업운전자: 0.02																	
캐나다	0.08	초보·직업운전자: 0.00																	
프랑스	0.05	초보·직업운전자: 0.02																	
독일	0.05	초보·직업운전자: 0.00																	
기타 제도	• (노르웨이) 2회 이상 적발 시 운전 면허 영구 정지 • (스웨덴) 음주운전자 1개월 월급 압류 • (호주) 적발 시 이름, 나이, 차량,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신문에 공개																		

Ⅲ. 문제점

1 운전자의 능동적 음주운전 제어 유도에 미흡

- 음주운전은 적은 양의 음주에도 치명적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만큼 치사율*이 높고, 한 번 위반한 사람이 반복 위반하는 상습성**이 높음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2.0명으로 비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18% 높음

** 2019년 음주운전 재범률 43.7%, 마약류 사범 재범률 35.6%

- 음주운전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겪는 국민은 하루 평균 85명, 사상자 가족(3인 가족)을 포함할 시 하루 평균 250여명에 이름
-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은 최근 3년(2017~2019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 ('17) 3,119 건 → ('18) 3,573건 → ('19) 5,731건

- 그러나 현재 음주운전 위반자 대상 면허정지·취소 처분, 안전의무교육 이수 등 제재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범 방지에 한계

- 음주운전자는 면허 정지기간 또는 취소처분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강의·시청각 등 방식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운전 재개 또는 면허 재취득 가능

* (결격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 사망사고는 5년간 면허 취소

- 음주운전자의 재범 횟수가 평균 5.97회*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제재는 운전자가 능동적으로 음주운전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미흡

* 음주운전자의 평균 음주운전 횟수 5.97회, 29.6%가 10회 이상(도로교통공단)

- 미국·EU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1980~90년대부터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해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를 수동적으로 제어

- 유럽 다수 국가*는 과거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제재의 의미가 아닌 모든 교통참여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시스템 형성 차원에서 도입

*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안전 등

- 음주운전 위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50~90% 감소(미국, EU)⁴⁾

< 해외 운영 현황 >

- (개념) 차량시동잠금장치란, 차량 연계 호흡 측정기로 알코올이 감지될 시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주행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 (측정) 운전자는 얼굴인식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시킨 후 호흡을 불어 넣어 알코올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만 차량 시동 가능
- (관리) 운전자는 장치관리기관에서 정기 점검을 받고, 관리기관은 운전자의 기록을 사법기관(경찰 등)에 제출, 사법기관은 위반사항 점검 및 제재
 - * 장치를 떼어낸 경우, 장치를 변경·조작한 경우, 대리 측정하거나 시도한 경우 등
- (도입현황) 영미권 국가 및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초범부터 의무 설치 하도록 도입·운영 중

※ 해외 현황 참조(7p)

- 우리나라는 해외와 비교*할 때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많음에도 그간 음주운전 처벌 강화 외에 사전 예방 대책 수립에는 소극적

* 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위이며 음주운전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10%를 차지

- 현재 음주운전 근절을 원하는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 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음

※ 치킨 배달하던 가장이 숨진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국민청원(63만명 동의),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가 문제된 60대 부부 음주운전 사상사고 국민청원(27만명 동의)

- 음주운전자에게 운전 재개를 위한 추가적 의무를 부여해 경각심을 높이고, 수동적으로라도 음주운전 습관을 교정·제어하여 재범 방지 필요

4) Elinore J. Kaufman and Douglas J. Wiebe, Impact of State Ignition Interlock Laws on Alcohol-Involved Crash Deaths in the United States(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016.)

<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 결과 >

- (1차 의견조사)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에 응답자의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
※ 조사 기간: '20.11.13.~12.3, 참여 인원: 1,850명
- (2차 의견조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에 응답자의 95.1%가 '찬성한다'고 응답
 - 그 중 79.5%는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을 여객·화물 운송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
 - ※ 조사 기간: '21.2.25.~3.10, 참여 인원: 2,187명

< 전문가⁵⁾ 자문 의견 >

- 스웨덴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 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90% 감소하고 운전자 스스로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여기는 경우 증가
- 차량시동잠금장치는 별도 관리 기관 설치 없이 운영 가능. 잠금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관리센터에 주기적으로 제출하고, 관리센터는 6개월~1년마다 장치의 정밀도 등 검사 실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 가능. 해외 일부 운수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설치하기도 함
- 음주운전 위반자 중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운전자가 비설치 운전자에 비해 재범률이 67% 낮고, 제거한 경우에도 50% 낮음
- 차량시동잠금장치 비용 부담 문제는 도입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며 음주운전자는 비용을 100% 부담하고, 버스, 통학차량 등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차량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 필요
- 스웨덴의 '비전 제로 정책', 네덜란드의 '지속가능한 안전' 정책도 모든 교통 참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등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5) 음주운전 피해자 법률대리인(변호사 3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총 9인

2 운전자의 근원적 음주운전 습관 개선에 한계

-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 비중(72.7%)은 일반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 비중(28.6%) 보다 2.5배 높고,⁶⁾
 -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음주운전 할 가능성은 일반인의 7.5배로 알코올사용장애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주요 원인
- ※ 알코올사용장애: 지속적 과도한 음주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발생하는데도 의지대로 끊지 못하는 증상, 알코올 중독·의존·남용을 포함한 공식 질환명
- 그러나 현재 교통안전의무교육,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등 음주운전자 대상 제재는 질병 치료적 접근 부족으로 근원적 재범 방지에 한계
 - 음주운전은 알코올사용장애 증상의 하나로 뇌 질환인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한 음주운전을 개인 의지로 제어하기에는 어려움
 - 특히 우리나라 국민은 알코올사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드물어 자발적 음주운전 자제에 한계
- * 조사대상자의 연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11.5%인데 비해 음주 습관으로 상담 받은 경험은 1.1%에 불과(보건복지부 실태조사, 2015)
- 미국·EU 등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1980~90년대부터 음주치료 의무를 도입해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습관을 근원적으로 개선
 - 음주운전의 범행과 처벌이 반복됨을 해결하고, 범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함으로써 법·제도의 공정성·효과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
 - 음주치료를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와 병행 도입 시 장치 제거 후 반복될 수 있는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방지 가능
- * 음주치료와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병행 시, 재범방지 효과가 32% 더 높음⁷⁾

6) 채규만, 류명은, 성격·인지·사회적 환경 및 음주행동과 음주운전간의 관계(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 해외 운영 현황 >

- (개념) 음주운전을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고 음주운전자의 성향,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평가하여 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 치료를 통해 근원적 재범 방지
- (운영) 정신건강 및 법률 전문가가 음주운전 위반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반사회적 성향, 준법·윤리의식 등을 정밀 진단하고, 교육부터 입원치료까지 대상에 맞춘 단계별 치료프로그램 운영
- (관리) 치료전문기관은 치료 대상자의 프로그램 참여 태도, 결과 등을 사법기관(경찰 등)과 공유하고, 사법기관은 필요 시 제재 등 조치
- (도입현황) 영미권 국가는 치료 사법(司法)*의 형태로, 다수의 유럽 국가는 행정적으로 면허 재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사항의 형태로 운영
 - * 치료사법: 상습성과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에서 근본적 원인 치료를 위해 형사사법상의 감독과 치료를 병행하여 재범을 방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세계적으로 확산 중
 - ※ 해외 현황 참조(7p)

○ 우리나라는 음주를 매개로 친목을 도모하고 업무관계를 유지하는 음주에 관대한 문화⁸⁾가 있어 국민 1인당 음주량이 높고*,

* 국민 1인당 음주량⁹⁾: 2015년 9.1L(OECD 9.0L), 2016년 8.7L(OECD 8.2L)

- 음주로 인한 국민의 알코올사용장애 등 유병률은 세계 4위*로 높아 알코올사용장애로 인해 음주운전 할 가능성이 높음

*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은 13.9%로 헝가리, 러시아, 벨라루스 다음으로 세계 4위(WHO, 2016)

- 현재 상습적 음주운전자의 경우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에 국민 공감대가 높은 만큼 음주 습관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대책 필요

7) Robert B. Voas, Mandating Treatment Based on Interlock Performance: Evidence for Effectiveness(ISBRA, International Society for Biomedical Research on Alcoholism, 2016)

8) 조병희, 개인 음주행태 요인분석 및 음주행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최종보고서(보건복지부, 2018)

9)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 결과 >

- (1차 의견조사)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의무적 음주치료프로그램 도입에 응답자의 88.1%가 '필요하다'고 응답
※ 조사 기간: '20.11.13.~12.3, 참여 인원: 1,850명
- (2차 의견조사)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서 맞춤형 치료(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95.1%가 '찬성한다'고 응답
※ 조사 기간: '21.2.25.~3.10, 참여 인원: 2,187명

< 전문가¹⁰⁾ 자문 의견 >

- 음주운전 습관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고를 발생시켜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음주운전 가해자 입장에서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치료 필요
- 우리나라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중독자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고 (일본 26%, 미국·유럽 58%) 알코올중독 환자는 음주운전 가능성이 일반인 보다 7.5배 높음
- 알코올중독은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의 하나로 진단기준 중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를 함'이 있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위가 음주운전임. 즉,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을 질병의 한 증상으로 봄
- '알코올사용장애'는 뇌에 발생하는 만성 재발성 질환으로 개인의 의지, 약속에만 의존해서는 재범 방지에 한계. 음주운전자가 전문적 치료를 받는 경우 수강명령, 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재범 감소에 효과적
- 음주운전자에 대한 음주치료 의무가 도입될 시, 신속한 대상자의 선정과 배치가 필요하고,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 전문병원(전국 20개) 및 중독 관리통합센터(전국 50개)를 활용하여 전문성을 담보로 한 치료 필요
- 치료 효과 진단은 전문의가 환자의 말, 행동 등을 통해 진단. 병원에 꾸준히 오는 환자는 경과가 좋고, 환자가 음주 사실을 속이는 경우를 대비해 보호자의 정보를 보충해 객관적으로 진단함

10) 음주운전 피해자 법률대리인(변호사 3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총 9인

IV. 개선방안

1 음주운전 행태 제어를 위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이 금지된 기간*이 지난 후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운전면허 정지 기간 및 취소기간(음주운전 교통 사고 1회는 2년, 2회 이상은 3년, 사망사고는 5년) 동안 운전 금지

- (기준) 음주운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의무 설치 기간 설정

※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의무 설치 기간(예시)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구분	의무 설치 기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면허 취소 처분을 1회 받은 경우	1년
면허 취소 처분 2회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를 1회 일으킨 경우	2년
면허 취소 처분 3회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를 2회 일으킨 경우	3년
면허 취소 처분 4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사고(경상해) 3회 이상 또는 음주운전 사고(중상해, 사망)를 발생시킨 경우	4년

※ 참조: Ignition Interlock Laws in the USA

- (관리) 경찰청(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기록, 장치 불법 변경·조작 등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시 의무 설치 기간 연장

※ 장치 설치자 위반 사항 및 제재(예시)

주요 위반 사항	1) 장치 설치를 고지 받고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는 정지처분 시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는 취소처분 시 및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 재취득 시에 운전을 하려는 경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을 고지
----------	---

	2) 장치의 정상적 작동 을 방해하기 위해 변경, 조작 등 행위 를 한 경우
	3) 설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호흡을 대신 측정하거나 측정을 시도한 경우
	4) 장치에 대해 30일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 검사 를 받지 않은 경우
	5) 장치 설치 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 기록된 경우
제재 조치 (대여자는 증빙자 료를 제출해 소명 가능)	• 위반사항 1)~4)에 해당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단, 3회 이상(예) 위반 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근거 마련
	• 위반사항 5)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규정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하고, 필요 시 별도 근거 마련

※ 참조: Ignition Interlock Laws in the USA

○ (지원) 도입 초기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비용*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재정 지원, 장치 설치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할인 인센티브 제공

* 장치 설치비 \$100, 대여비 월 \$100(미국)

※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는 장치 설치 후 음주운전자의 위험도가 감소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률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21.3, 국민권익위 간담회)

○ (일반예방) 승객 운송(시내·시외·마을버스, 통학·통근차량, 택시 등), 화물 운송 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부터 시작해 일반 차량으로 확산

※ 자발적으로 설치할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보험회사), 자동차 인공지능시스템에 포함 또는 내장 옵션으로 개발(자동차 회사), 자발적 구매(운송회사)

※ 국민 의견조사 참여자의 58.4%는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고, 차량 출고 시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국민생각함, '21.2.)

2 음주운전 습관 근원적 치유를 위한 음주치료 이수 의무화

○ (대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초범 포함*)

* 88회의 음주운전 시 1회의 비율로 단속¹¹⁾된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처음으로 단속된 음주운전 위반자라고 하여 초범이라 보기 어려움

○ (방법) 음주운전자의 성향, 심리적·정신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정밀 분석·평가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치료 실시

※ 음주운전 정도에 따른 치료 내용(예시)

구분	음주치료 내용
(1단계) 평가	음주운전 위반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위험 애호 및 심리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정밀 측정·분석
(2단계) 설계	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 치료방법과 기간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 맞춤형으로 설계
(3단계) 치료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 건강 전문가*가 전문적 치료 실시 *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중독 전문병원, 중독관리통합센터 등 활용 ** 치료 대상자 수를 고려해 공익보건의 적극 활용 ※ 주간 근로로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운영

※ 참조: Impaired Driver Care Management Program(New Hampshire in USA)

○ (절차)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치료 의무 고지, 전문가의 정밀 평가 및 치료, 경찰청의 치료 이수 여부 확인 및 치료 의무 해태 등 관리

※ 음주치료 절차(예시)

11) Dawn Balmforth, National survey of drinking and driving attitudes and behavior(U.S.Department of Transportation, 1997)

고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는 정지처분 시 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는 취소처분 시 및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 재취득 시 에 운전을 하려는 경우 공인된 치료 기관에서 음주치료를 받아야 함을 고지
치료	치료 전문가는 정밀 평가를 통해 치료 방법·기간을 설계 대상자의 치료 과정을 관리하고 특이 사항 이 있는 경우 경찰청에 알림
관리	치료 대상자는 치료를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경찰청에 제출 경찰청의 치료 이수 증명 확인 후 치료 대상자는 운전 재개 또는 면허 재취득 가능
제재	1) 면허 정지처분 을 받은 대상자가 음주치료를 받지 않고 운전을 재개 하는 경우, 2) 2회 이상 치료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 특이 사항 이 있는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 치료 대상자는 경찰청의 결정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소명 가능

※ 참조: Impaired Driver Care Management Program(New Hampshire in USA)

○ (지원)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음주치료를 이수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 보험개발원·손해보험협회는 음주치료 후 운전자의 운전습관 개선으로 위험도가 감소되는 경우, 보험료 할증률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가능 (‘21.3, 국민권익위 간담회)

IV.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대상기관 : 경찰청

□ 조치사항

과제내용	관계법령 등	조치기한
① 음주운전 행태 제어를 위한 차량시동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 설치 대상, 기준(위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설치 기간 설정), 장치 조작·변경·정기점검 등 관리 방안 마련 위한 연구 ○ 장치 관리 및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장치 제작기준·인증·사후관리 등 관리체계(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지원(기획재정부), 설치 대상자 보험료 할증률 할인(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배포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21. 8월 (연구) '21. 12월 (관계기관 협의) '22. 12월 (법령 개정)
② 음주운전 습관 근원적 치유를 위한 음주 치료 이수 의무화 ○ 치료 대상, 방법(평가지표 설정, 치료프로그램 구성) 등 마련 위한 연구 ○ 치료 전문기관 지정, 전문가 풀 마련 및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치료 전문기관 지정 등(보건복지부), 치료 대상자 보험료 할증률 할인(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 관계 법령 개정 및 지침 마련·배포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21. 8월 (연구) '21. 12월 (관계기관 협의) '22. 12월 (법령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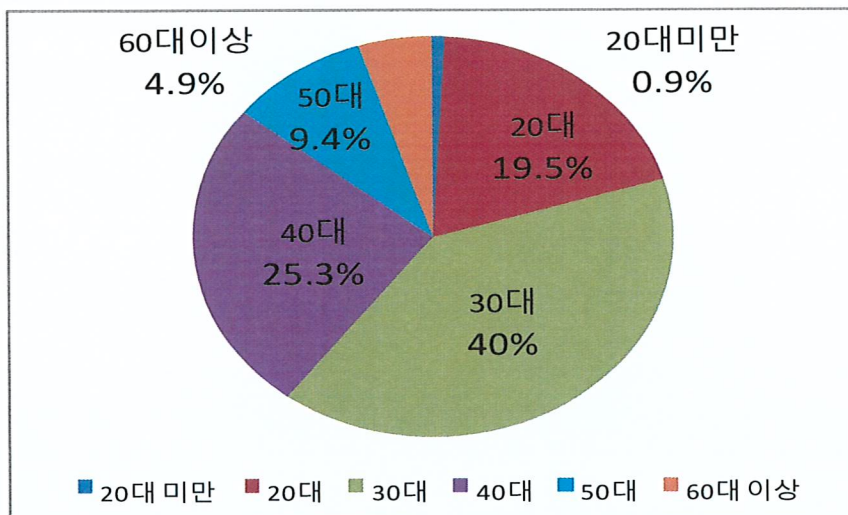
※ 관계기관(경찰청,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등) 협의체에서 검토 예정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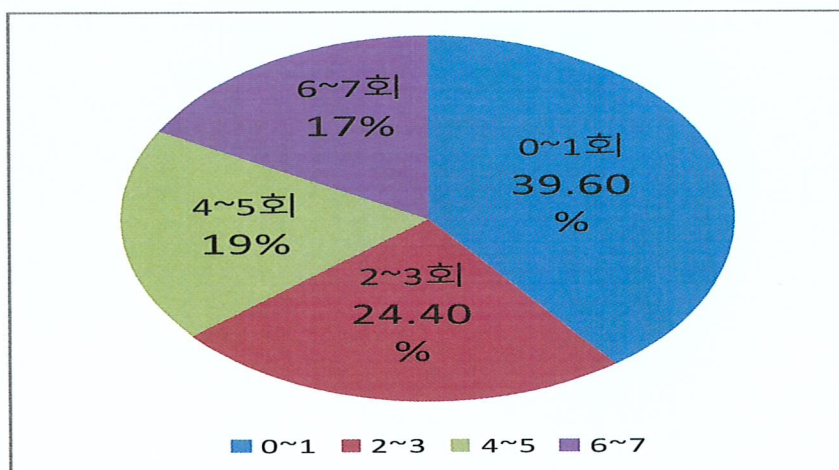
- 기간: '20. 11. 13. ~ 12. 3. ※ 총 1,850명 참여
- 방법: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 내용: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준 및 예방대책 관련 의견 수렴

□ 응답자 특성

- 성별 분포: 남성 53%, 여성 47%
- 연령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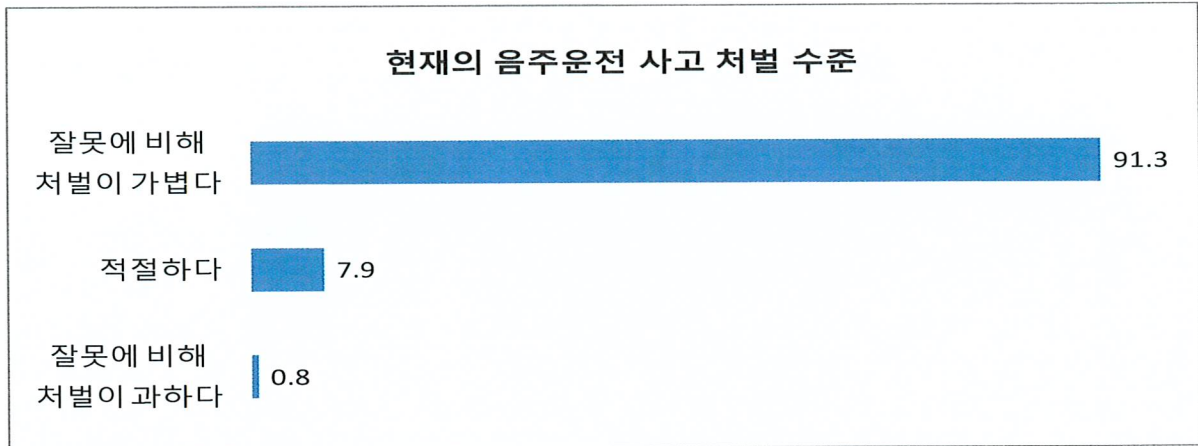


- 운전 빈도별 분포(일주일 간 운전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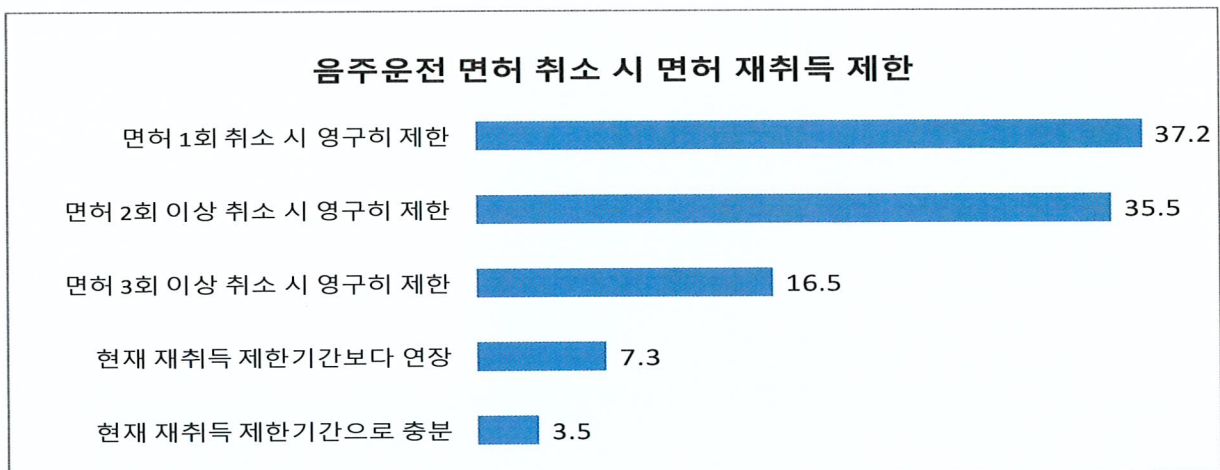


□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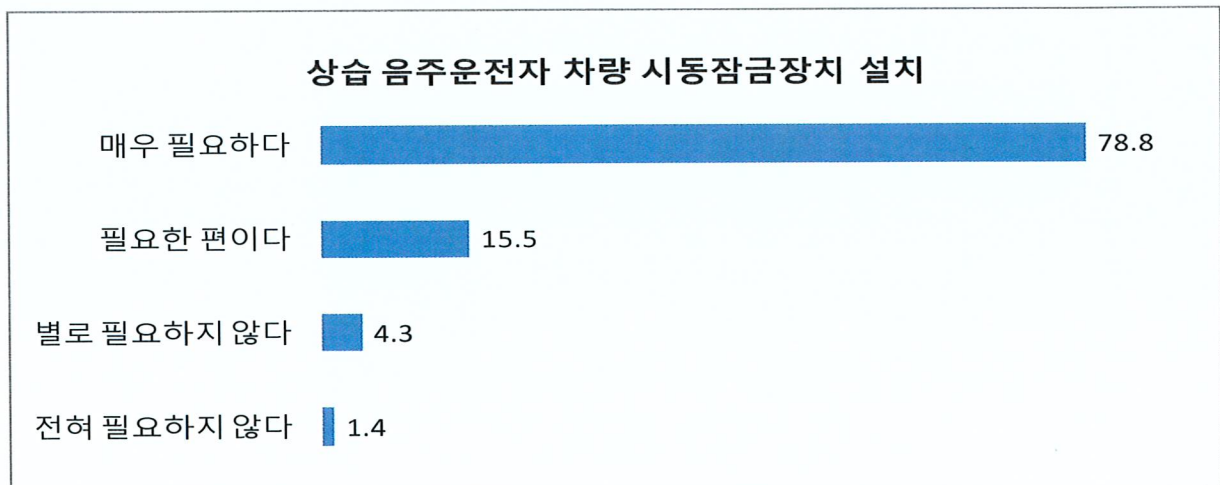
○ 현행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준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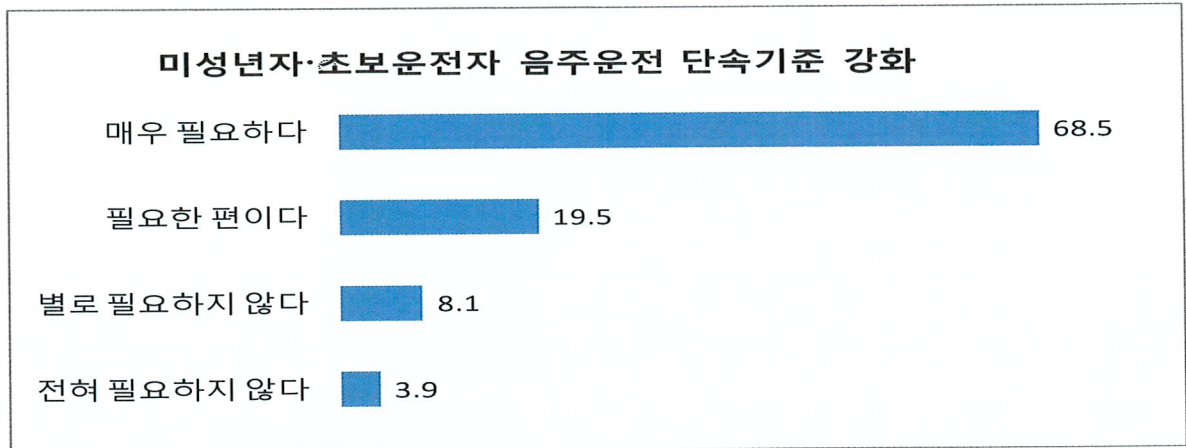
○ 음주운전자 면허 재취득 제한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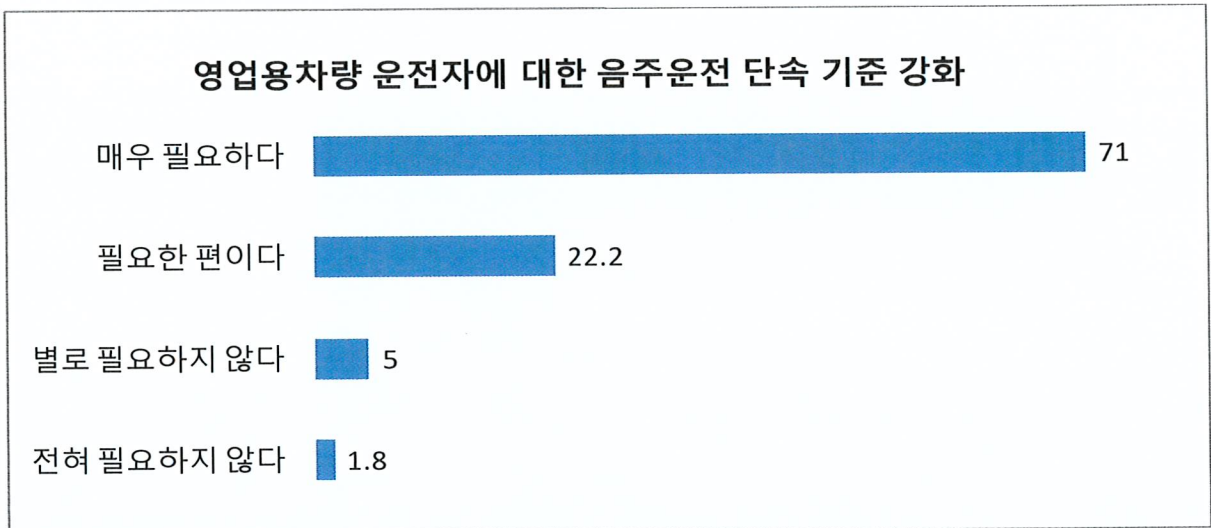
○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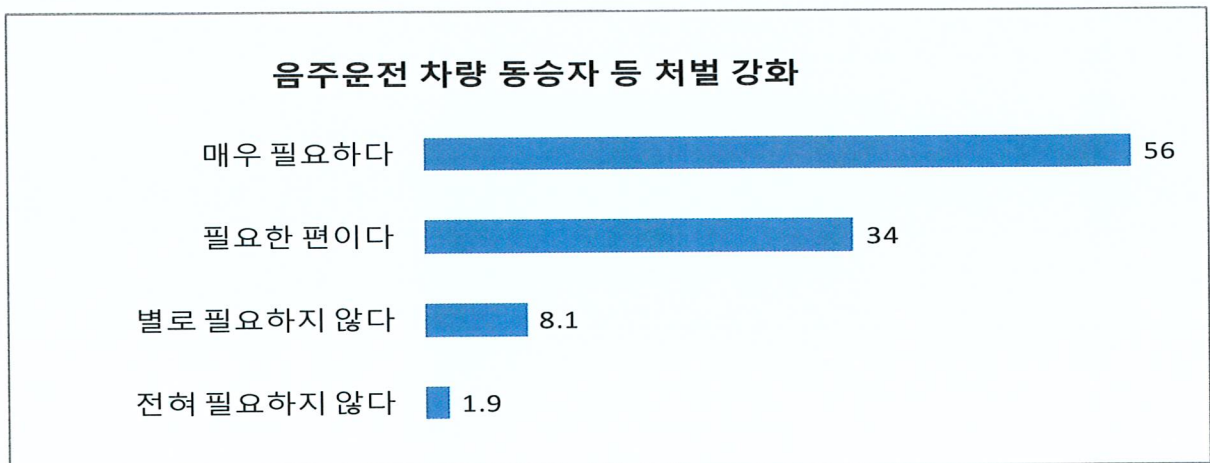
○ 미성년자·초보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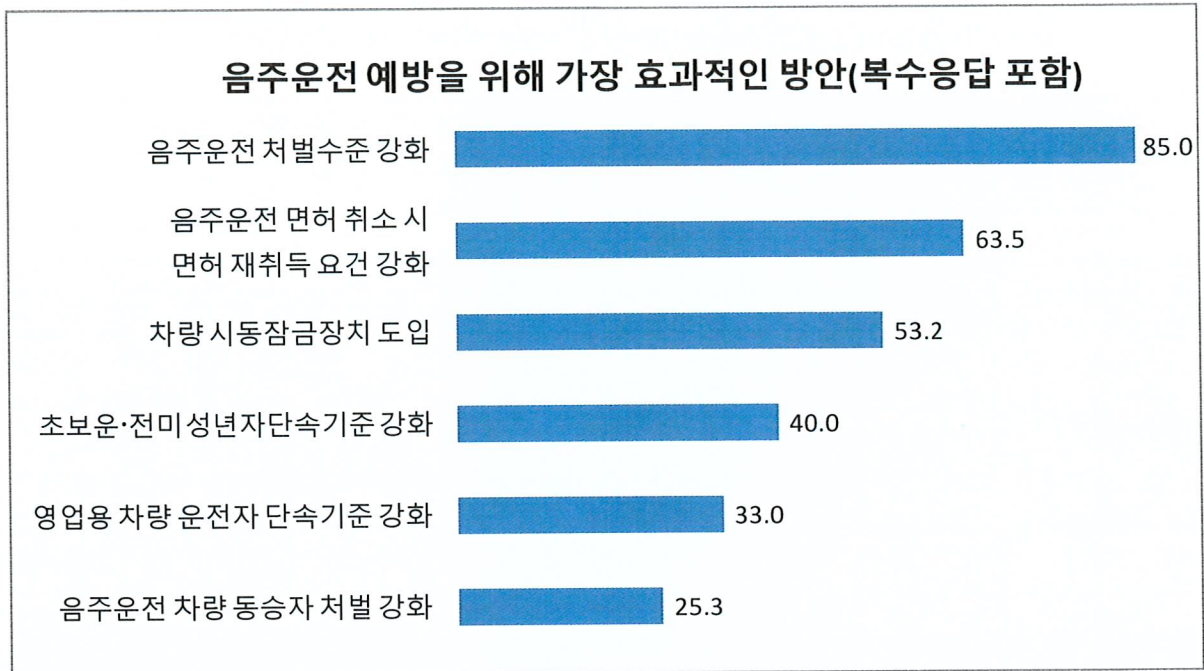
○ 영업용차량 운전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의견



○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이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3가지 선택)



○ 기타 주요 의견

- 중·고등학생 때부터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여 운이 나빠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 **생계의 어려움,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을 해주어서는 **안 된다**. 생계형 운전자나 초범일수록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 음주운전은 음주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 여부 자체가 중요**하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처벌을 함은 타당하지 않다.
- 음주가 자랑이고, 사회생활의 필수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방송에서 음주장면을 자제**하거나 **술 포장재에 음주관련 질병의 위험**을 경고하는 등 경각심을 높일 필요
- 해외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에 1년이 소요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함. 우리나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시 **운전면허 재취득 시험을 어렵게 하는 방안** 도입 필요하다.

참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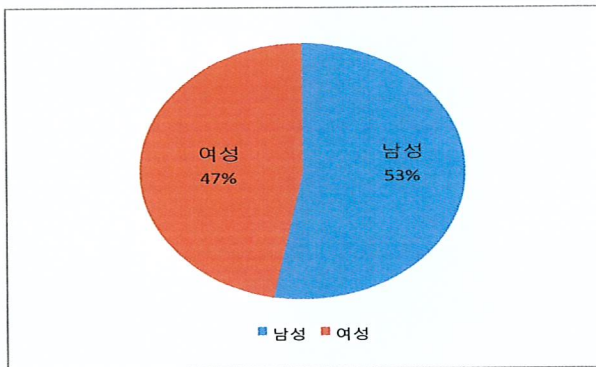
국민생각함 국민 의견조사 결과(2차)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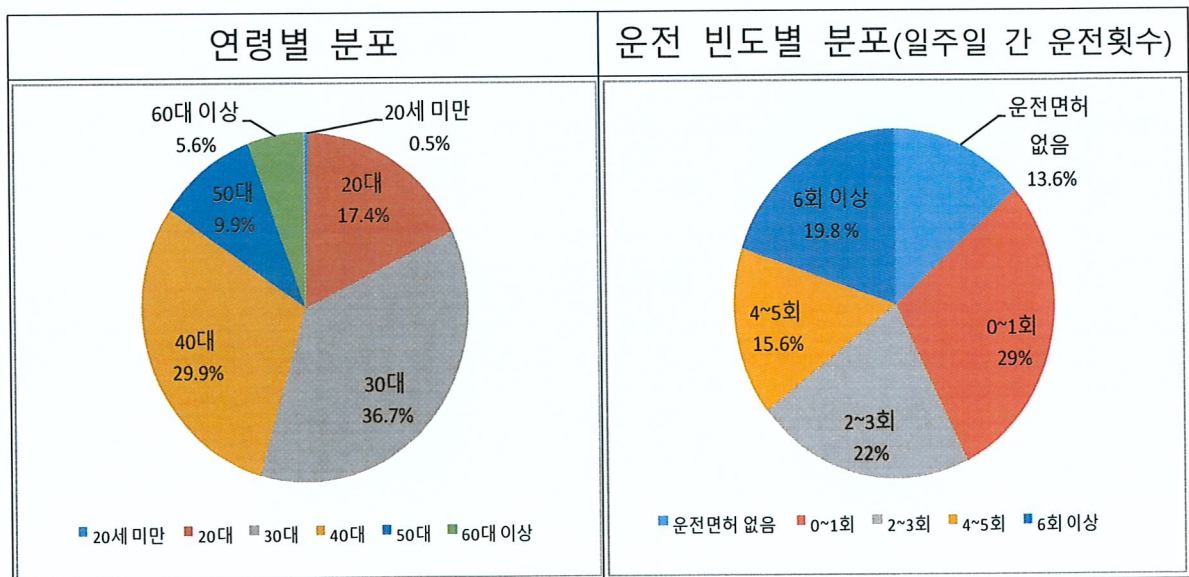
- 기간: '21. 2. 25. ~ 3. 10. ※ 총 2,187명 참여
- 방법: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 내용: 음주운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음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설문

□ 응답자 특성

○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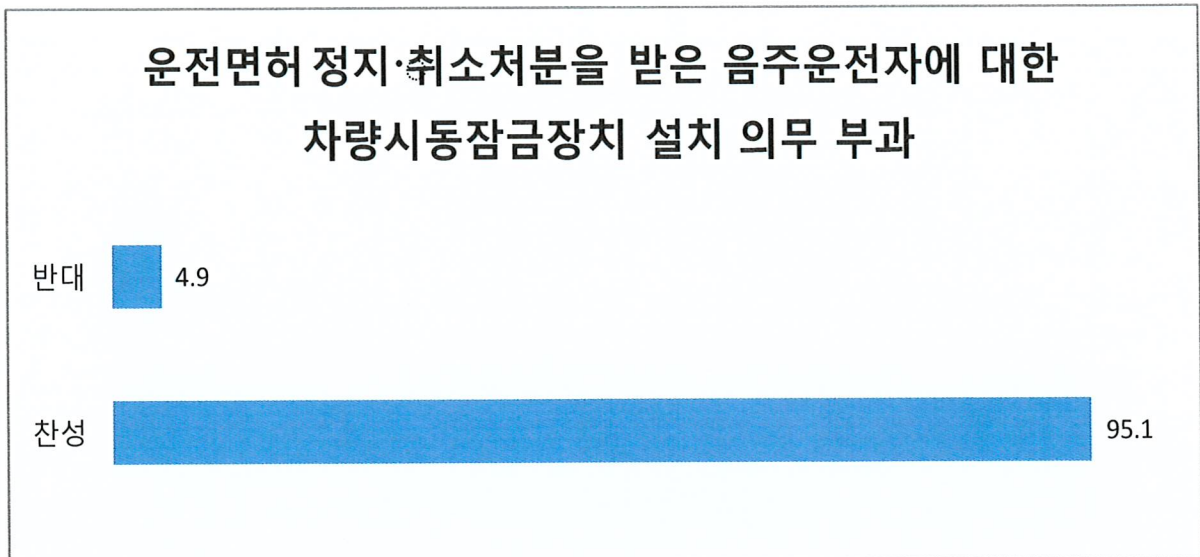


○ 연령 및 운전 빈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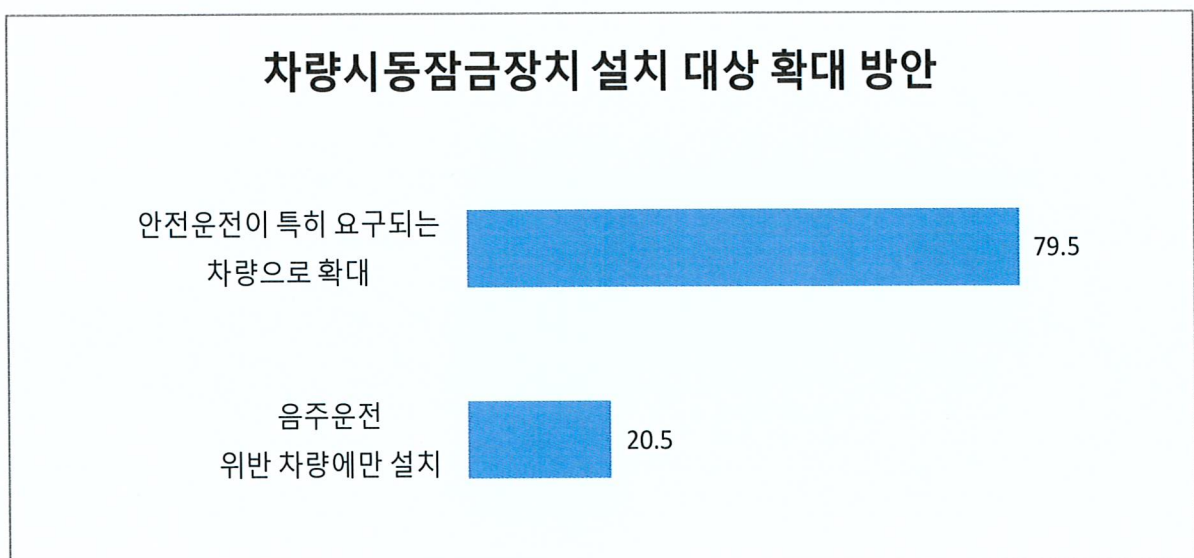


□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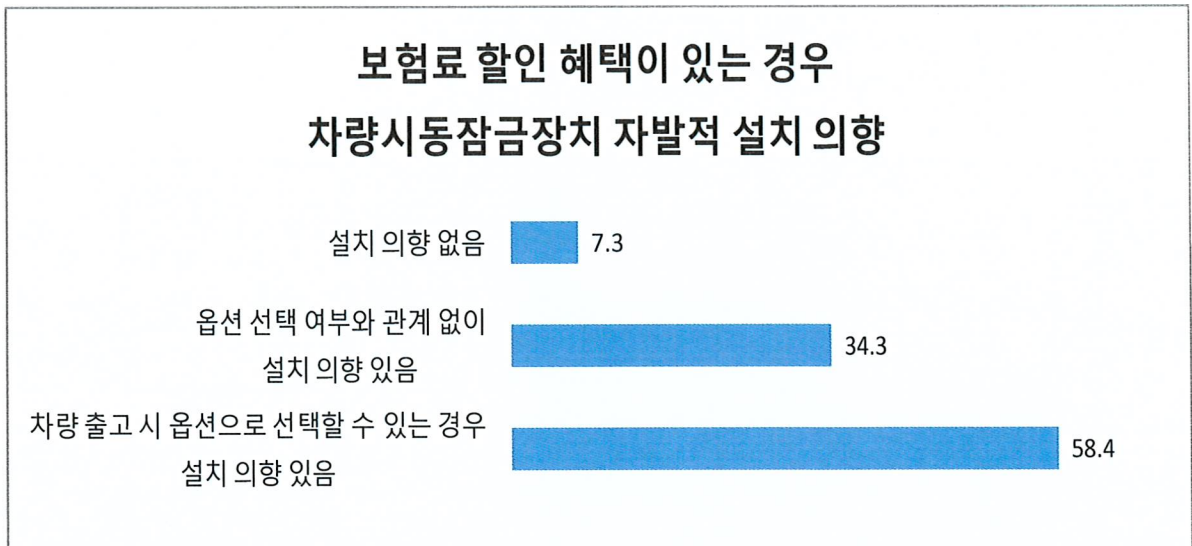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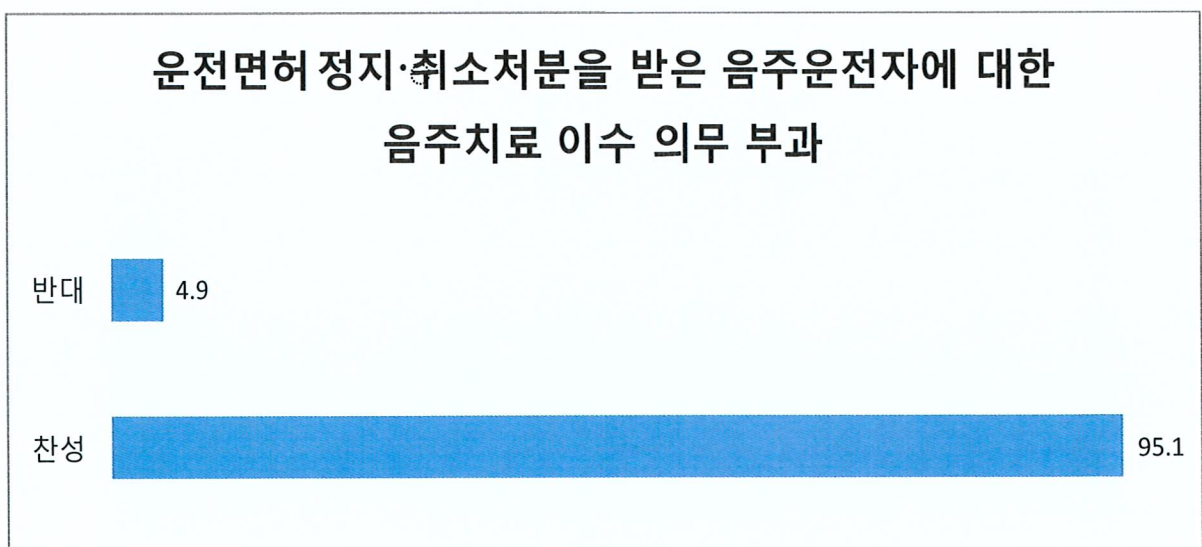
-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대상을 여객·화물 운송차량 등 안전운전이 특히 요구되는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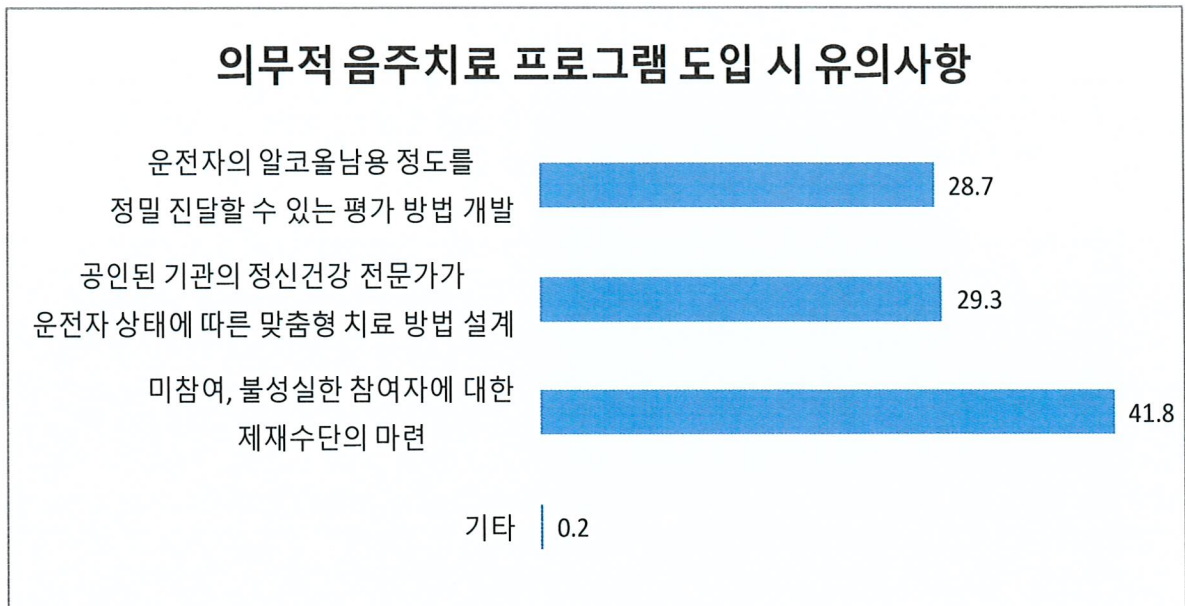
-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상담, 정신치료, 훈련 등)를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의무적 음주치료 프로그램 도입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



○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자유로운 의견(주관식)

- 음주운전에 대해 정상적 상태에서는 모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음주 후에는 생각이 변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함. 강력한 처벌도 좋지만 단순히 운전자의 판단과 의지에 맡기기보다 **다양한 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함.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한 때임**
- 이번 조사를 통해 **차량시동잠금장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도입 시 호흡을 대신 측정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얼굴 인식, 홍채 인식 등 기술이 마련되어야 함**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알코올중독치료센터처럼 음주운전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센터에서 주기적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
-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생각함.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참여하지 않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

- 음주운전은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함.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함
- 우리나라는 특히 소량 또는 특정 종류의 술은 약주라는 인식, 이 정도의 취기이면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괜찮다는 **안전 불감증**이 큼. **인식개선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확실한 제재**가 필요함
- 음주운전은 흡연처럼 **습관적 행위**의 하나임.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재산상 손해가 엄청나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각인**되어야 함
- 음주가 나쁜 문화는 아니나 **그간 음주를 권장하고 두둔하는 문화**가 강했음. 이제는 그 폐해가 심각함을 인식해가고 문화 또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함. 앞으로도 음주운전 폐해를 나타내는 사례를 언론을 통해 인식시키고 **음주가 미화되는 영화나 드라마 제작에 유의**하여야 함
-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개선**을 위해 주기적 캠페인 필요
-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주류업체들이 이벤트를 통해 음주운전 인식 개선 캠페인에 앞장**서야 함. 주류 광고 포스터를 음주운전 금지 포스터로 바꿨으면 함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인데 사고 시 오히려 **피해자만 억울한 상황**을 겪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음. 음주운전을 방관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3번 적발 시 면허취소 등 강력 처벌 필요
- 음주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강력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함. 일본은 음주운전 위반 시 벌금액이 높아 일본 지인들은 음주운전을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음
- 국민 여론은 이미 충분하게 합의되었다고 여겨지므로 개인의 자유만큼 중요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함. 법령 상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어도 **여전히 처벌 수준은 국민 정서와 괴리**돼 있음

정 본 입 니 다.

2021. 4. 13.

국 민 권 익 위 원

